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진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Chin, Sang-Chul

Professor, 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system improve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which is changing continuous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cultural heritage, including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ites, must be defined. If possible,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stablish the natural monuments law and scenic sites law, respectively,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Second, na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by focusing on "space" to include cultural artifacts and landscapes that may be missing through the method of "object" focused protection. Institutionally, the scope of work should be clearly shared by reviewing the redundancy and interrelationship of related laws. Third,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natural heritage, a department that is wholly responsible for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established independently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urth,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should be specified as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issioner of commission at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uch as expending the roles of the repairing technician for landscape architecture and plants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Key words: Classification System, Natural Monument, Natural Property, Scenic Site, World Heritag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별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명승, 문화재 수리, 세계유산, 자연문화재, 천연기념물

* 본 논문은 「2017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Chin, Sang-Chu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367, Baekjemun-ro, Gyuam-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Tel.: +82-10-2643-3341, E-mail: chinsch@nuch.ac.kr

I. 서론

2019년 7월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 체계를 탈피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는 '자연문화재'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별도의 정의 없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언급되어 있다. 오늘날 각종 개발이나 급변하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조경의 위상과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개념적 몰이해의 출발은 과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법은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문화재 조경에 대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경관과 조경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고도보존법을 국내에 도입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경에 대한 항목이 다수 누락된 채 제정되었다.

이처럼 문화재 분야에서 조경에 대한 인식이 저평가되는 흐름은 2000년대 들어서 문화재 유형의 재분류에 대한 논의에서도 계속되었다. 2004~2010년 사이에 진행된 선행연구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전체 분류 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조경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2010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된 문화재의 유형별 세부 연구에서 조경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념물에 해당하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재를 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자연유산의 위상에 대한 제고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6]. 자연유산에는 조경의 대상이 다수 포함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지칭되는 자연유산의 개념에서 조경 대상을 파악하고 그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개념 정립과 보호·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문화재 조경의 인식 상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국외 문화재 보호제도에서 문화재 조경의 보호 정책과 관리 조직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조경의 위상 제고 및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조직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국내의 문화재 조경에 대한 인식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을 말한다. 즉, 문화재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신적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문화재의 범위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갖는 것과 더불어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형의 시설물 외에도 지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이나 경승지 등의 자연적·지리적 환경과 함께 인간이 개입하여 조성된 조경 요소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재에 대한 개념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당시부터 자연유산에서 조경 또는 경관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7].

문화재 조경이라는 용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기념물에 포함된 ‘명승’과 ‘천연기념물’로 대변되고 있다. 각각에는 자연경관, 동식물의 서식지·번식지, 지형·광물·지질, 정원·원림, 경승지, 전설지, 인공수립지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개념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고적급유물보존규칙(1916)」에서 유래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을 거치면서 현재 기념물에 해당하는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분리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고적은 사적으로 변경되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기념물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즉, 자연유산은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명승이나 천연기념물과 함께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8].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총 2,929건 중에서 자연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562건에 이른다. 천연기념물은 459건, 명승은 113건을 차지한다.

천연기념물은 과거에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 중요하거나 또는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법률로 규정한 개체물이나 특이 현상과 그 개체나 특이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주변구역”으로 정의되다가 1982년과 1999년에 걸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노거수나 희귀식물 자생지, 희귀한 동·식물류,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의 역사와 가치를 내포한 자연유산으로서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관습·사상·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로 정의가 확대되었다[9]. 천연보호종의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노거수의 치유, 천연기념물의 보호 환경 구축 등 근대부터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복원, 관리를 위한 주된 행위 중의 하나는 조경이다.

한편, 명승은 2008년 재분류 과정을 거치면서 조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사적 및 명승’이나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담양 소쇄원(명승 제40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 진도 윤림산방(명승 제80호) 등이 뛰어난 조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재분류되었다.

이처럼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정의와 지정기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변화해 오고 있지만, 조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는 자연유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국외의 문화재 조경 보호 정책

1) 일본

일본의 문화재는 크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문화적경관, 전통적건조물군의 6가지로 구분된다(Figure 1).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을 특별사적, 특별명승 또는 특별천연기념물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9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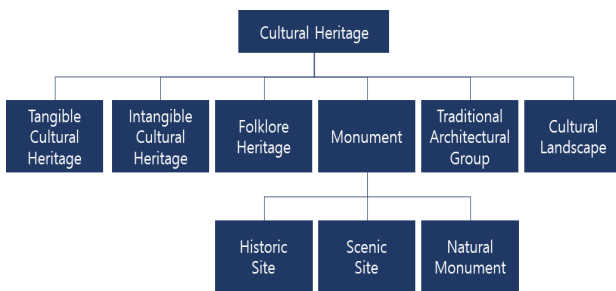


Figure 1.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Japan

일본의 문화재 분류체계는 조경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다. 천연기념물에 순수한 자연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 가해진 2차적인 식물군락이나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존해온 거목, 전통적인 가축이나 동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의 손이 가

해지거나 2차적인 식물군락은 ‘조경’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조성되거나 조영된 경관을 천연기념물에 포함시켜 문화재적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10]. 일본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재 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은 아쉽게도 자연적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달리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형성된 대상들 중 보호해야 할 조경 요소가 다수 누락되는 원인이 되었다.

2) 중국

중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문물(文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¹⁾. 문물의 유형으로는 역사적·예술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고대 문화유적만을 규정하되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은 포함하지 않는다²⁾. 한편, 중국은 자연유산에 ‘자연보호구(自然保護區)’, ‘풍경명승구(風景名勝區)’, ‘여유경구(旅游景區)’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1989)」의 ‘자연보호구’와 「자연보호구조례(1994)」의 ‘자연보호구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자연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는 자연물 자체에 대한 보호나 향유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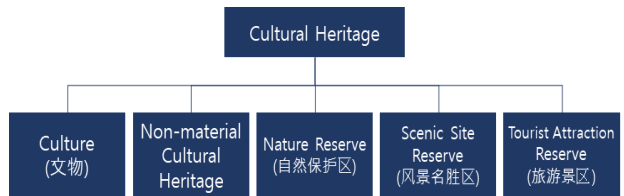


Figure 2.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또한, 중국은 2018년 3월 문화부와 관광청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를 신설하고[12], 국가 관광자원계획 및 품질평가위원회(全國旅游資源规划開發質量評定委員會)를 통해 중국여유경구질량등급(旅游景区質量等級)으로 ‘여유경구(旅游景区)’를 지정·관리하고 있다[13]. 여유경구는 유람(游覽), 휴가(休假), 심신단련의 기능을 구비하고 독립적인 관광 지역으로 경영관리기구와 풍경구(風景區), 문박물관(文博院館), 사묘관당(寺廟觀堂),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 자연보호구, 주제공원, 삼림공원, 지질공원(地質公園),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 및 공업, 농업, 경무(經貿), 과교(科教), 군사(軍事), 체육(体育), 문화예술 등의 명확한 지역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등급평가에서도 조경에 해당하는 경관이나 생태에 관련된 세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14].

이처럼 중국은 풍경명승구, 여유경구, 자연보호구 등 보전과

관리, 보호의 대상에 조정 요소가 포함된 자연유산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은 문화재 관계법령이 아닌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과 각 주의 『자연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다. 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거나 주요 동식물의 서식지, 특별한 지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소 등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에 중요하고 특별한 지역을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경관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경관요소 보호지구’, ‘생물권보존지역(Biosphaerereservate)’ 등 7가지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천연기념물은 희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희귀목, 오래된 가로수길, 용천 등 점적인 대상과 소택지, 건조한 초지, 폭포 등 면적인 대상으로 구분된다. 점적인 천연기념물의 지정 건수가 면적인 대상보다 많은 편이며 노거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노거수는 생물학적·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15].

경관요소 보호지구는 자연과 경관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환경의 성능과 기능 유지 또는 복원’, ‘지역 경관의 활성화와 관리’, ‘가로 및 가로수, 독립수, 생활타리 또는 조경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16].

4) 영국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크게 유형(Tangible)과 무형(Intangible)으로 구분하고 있다(Figure 3). 유형문화유산은 ‘문화적 자산(Cultural Property)’, ‘역사적 환경(Historic Environment)’으로 분류된다. 문화적 자산의 하위 유형에는 보물(Treasure)이 유일하지만, 역사적 환경의 범주에는 선정기념물(Scheduled Monuments), 등재건축물, 등재보존구역(Listed conservation area), 등록공원 및 정원(Registered Park&Garden), 등록전쟁유적지(Registered Battlefield), 난파선보호구역(Protected Wreck Sites)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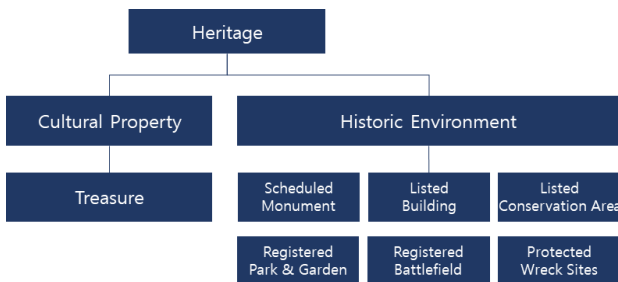


Figure 3. A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in England

이 중에서 특이할 점으로 ‘등록공원 및 정원’은 정원, 마을광장, 공원묘지와 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경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점이다. 양식이나 유형이 전형적이거나 혹은 시대를 대표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조경가가 조성한 장소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1등급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역사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은 2등급으로 지정하며 이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상은 30%를 차지한다[17].

3. 국외의 문화재 조경 관리 조직

1) 중국

중국의 경우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풍경명승구와 자연보호구는 국립임업국 국가자연보호구역 전문위원회 운영규칙(國家林業和草原局國家自然保護地專家委員會工作規則)에 따라 국가임업국(國家林業和草原局)에서 관리하고 있다[18]. 풍경명승구는 국가급 풍경명승구와 성급 풍경명승구로 구분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풍경구는 모두 국가급으로 관리되고 있다[19].

또한, 국가임업국은 자연보호구 1,958개 중 국가급 자연보호구 25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중국 자연보호구의 종합관리 부서로 자연보호구 253개 중 국가급 자연보호구 47개소를 관리하고 있다[20]. 자연보호구에 대해서는 전국의 산림, 습지와 산림야생동물보호구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 외에 농업·국토자원, 해양 수리, 거주와 도농 건설, 과학연구원, 단과 대학·대학교, 마을단위에서 일정한 수량의 보호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여유경구에 대한 정책 및 자금, 프로젝트, 인재교육, 홍보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여유경구질량등급은 문화관광부 내 국가 관광자원계획 및 품질평가위원회(全國旅遊資源規劃開發質量評定委員會)가 A등급에서부터 최고등급 5A등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여유경구질량등급의 구분과 평정(旅遊景區質量等級的划分与評定)에 자세한 등급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기준을 통과한 5A등급으로 지정된 여유경구가 2012년 11월 기준으로 중국 내에 147개 구역이 있다.

2) 미국

미국의 관리조직은 연방의회에 의해 창설되지만, 연방의 국립공원청 관할권이 아닌 주정부, 비영리기구(NPO) 또는 민간법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실제로 국립공원청은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관리계획들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에 반해 국가천연기념물은 ‘미국의 국가적 의의를 지닌

존재로서 연방내무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산하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유산을 크게 '역사적 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구분한다. 자연·문화유적지는 자연기념물과 자연문화유적지로 세분화된다. 자연기념물은 자연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자연문화유적지는 '예술적·역사적·학술적·전설적·회화적 유적지'의 보호를 위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문화유적지는 역사적 기념물의 부동산문화재와 같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면적인 공간개념을 전제하여 지정한다. 또한 자연문화유적지는 환경부와 건축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문화유산과 건축을 동등한 가치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천연기념물의 천연보호구역이나 명승의 보호구역이 단일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연문화유산과 건축요소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문화재 조경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1) 자연유산에서 문화재 조경의 위상 제고

자연유산의 개념은 당초 '자연보호의 상징'에서 확장되어 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특이성',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성',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민속·신앙 등 그 나라의 '향토성' 등 전통이나 풍토 또는 심미적 가치를 포괄한다. 이로써 자연유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민족의 유산'으로서 간주되며,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 대상으로서 국가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 특별한 자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21].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때 문화재 조경은 자연유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분류 방식과 개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예술적 작품, 건축물, 정원, 산업양식, 사상이나 인물관련 유산이 해당된다. 세계자연유산은 자연현상, 지질학적 과정, 생태학적 진화, 자연서식지 등이 지정된다. 정원 및 조경디자인은 세계문화유산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자연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다.

그러므로 명승과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자연유산으로 분류되는 기념물의 하위에 문화재 조경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즉, 기념물은 오래도록 뜻을 기념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물건(a building or place that is important, especially for historical reason)으로 사적의 의미

를 포함하므로 문화재 조경을 단순하게 자연유산으로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재 조경에 대한 위상 정립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조경 요소를 포함한 공간 중심의 보호

주요 국가들은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개체'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보존대상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일본과 한국은 특정한 문화재를 보존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대상의 주변 장소 또는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2중의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풍경명승구', 독일의 '자연보호지역', 프랑스의 '자연문화유적지'는 특정한 '장소'와 '개체'로 보존대상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보존은 '개체' 중심의 보호 방법에서 누락될 수 있는 특정한 자연지형 내 형성된 문화적 산물을 보호할 수 있고, 한편으로 문화유산에서는 놓칠 수 있는 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22]. 즉, '공간' 중심의 보존은 자연유산의 개념과 보호 방법의 설정에 있어서 상호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각각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한다[23].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과 관련해 동일한 공간(경관)과 생물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행정청들의 계획·규제·개발법을 제정하여 관리가 중복되고 있다. 일례로 문화재보호법 이외에 자연유산과 관계된 법령으로는 환경부문의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동일한 자연유산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유산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관계 행정청과의 상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된 업무 범위를 효과적으로 분담해야 한다[24].

3) 관리체계의 전문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문화재활용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정책국의 3개의 국과 공능유적본부가 있다. 하위 부서로 무형문화재과, 발굴제도과,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근대문화재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부서로는 천연기념물과, 수리기술과, 공능유적본부가 있다. 수리기술과나 공능유적본부는 공능의 조경, 식생 등을 관리하는 업무나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천연기념물과에서만 유일하게 자연유산에 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공능유적본부가 조경을

담당하지만 전체 문화재가 아니라 공능에 국한된다. 이외에 문화재 조경을 총괄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리나 보존 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정가의 구성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은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조경'은 분야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문화재보호법 상 경관적 가치라는 항목이 있고, 자연유산에서 문화재 조경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과 실측설계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조경의 실측설계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문화재 조경의 위상을 고려한 법률의 제·개정 방안, 문화재 조경 요소의 발굴과 확대 및 관리 전담 조직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 1) 중국에서는 문화재를 문물(文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REFERENCES

- [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4).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Support Management Pla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5). Classification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8).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system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4] Kim, H. S.(2009). Category and Change of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Concept. Architectural Research. 53(11):16-19.
- [5]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2010).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 [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1).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ural Heritage Law.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7]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2011).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ural Heritage Law.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8] Yu, C. M., Park, D. S., Kwon, O. B. and Lee, J. G.(2004). A Study on the Natural Monument Preservation Method of Landscape: Focusing on Ceremony Standard of The Government Employee and Citize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2(1):102-109.
- [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03). A White Book of Natural Monumen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10] Yi, S.(2009). Korea's Natural Heritage-History of Natural Monuments and the Their Stories. Seoul: Suryu sanbang.
- [11]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of Inha University(2010). Collect, translate, and analyz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1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h/2018-03/13/c_137035413.htm
- [13] http://zwgk.mct.gov.cn/auto255/201811/t20181101_835720.html?keywords=
- [14] 旅游景区質量等級的划分与評定(GB/T17775 - 2003)
- [15] Yi, S.(2007). Designation History of Natural Monuments in Korea and Foreign Cases.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Seminar and Staff Training in 200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16] <http://www.gesetze-im-internet.de/>
- [17] Registered Parks & Gardens Archived 4 April 2015 at the Wayback Machine page on Historic England. Retrieved 23 December 2010.
- [18] <http://www.forestry.gov.cn>
- [1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5). A Study on the Norms and Contents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in Developed Countries - Natural Propert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20] Yao, Z., Kim, D. P. and Moon, H. G.(2015). Study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na's Natural Reserve.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29(3): 474-484.
- [21] Kim, C. K.(2012).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Dongbangmunhawsa.
- [22] Jo, H. S.(2013). Basic concept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Master's

Thesis of Hannam University.
[23] Kim, H. S.(2014). Eine Studie über die Begriffsbestimmung des Naturerbes als die Konzeption des nationalen Erbes,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15(1): 505-532.

[24]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02). A Study on Maintenance of Laws related to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원 고 접 수 일: 2019년 8월 16일
심 사 일: 2019년 9월 6일 (1차)
 : 2019년 9월 16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9년 9월 1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